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3

(비공식번역본)

위반사항 및 비상조치 통보에 관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Notification of Non-Compliance and Emergency
Action

2001

FAO/IPPC 사무국

차 례

서 론

범위

참고문헌

용어정의 및 약어

요건의 개요

요건

1. 통보의 목적

2. 통보된 정보의 이용

3. 통보와 관련된 IPPC 조항

4. 통보의 근거

4.1 중요한 위반사항

4.2 비상활동

5. 통보 시점

6. 통보에 포함되는 정보

6.1 요구되는 정보

6.2 보조정보

6.3 호칭, 부호, 약어

6.4 언어

7. 문서 및 통신수단

8. 병해충 분류동정

9. 위반사항 및 비상조치에 대한 조사

9.1 위반사항

9.2 비상조치

10. 경유

11. 재수출

승 인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은 FAO의 식물검역에 대한 정책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PPC 사무국에 의해 작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조치의 사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FAO 회원국 및 다른 관련단체들이 이러한 기준, 지침 및 권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준은 2001년 4월 제 3차 ICPM(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FAO의장 Jacques Diouf

적 용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ISPMs)은 IPPC 체약국 및 IPPC 체약국이 아닌 FAO 회원국들에 의해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채택된다. ISPMs은 SPS 협정에 근거하여 WTO 회원국들이 적용하는 식물위생조치의 근거가 되는 기준, 지침 및 권고이다. IPPC 체약국이 아닌 국가들도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재검토 및 개정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된다. 이 기준의 차기 검토일자는 2004년 또는 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정하는 날짜이다.

기준은 필요시 개신 및 재발행 될 것이다. Standard holder는 현재 사용되는 edition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배포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은 IPPC 사무국에 의해 모든 FAO 회원국 및 지역식물보호기구의 집행(기술)국에 배포된다.

- 아·태 식물보호위원회(APPPC)
- 카리브 식물보호위원회(CPPC)
- 남아메리카 식물보호위원회(COSAVE)
- 안데스 위원회(CA)
- 유럽·지중해 식물보호기구(EPPO)
- 아프리카 식물보호협의회(IAPSC)
- 북미 식물보호기구(NAPPO)
- 중남미 식물보호기구(OIRSA)
- 태평양 식물보호기구(PPPO)

서 론

범위

이 기준은 다음 사항의 통보에 대한 각 국가들의 조치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 규제병해충의 검출과 같이 수입된 화물에서 식물위생요건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수입된 화물에서 식물위생 증명에 필요한 서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동 상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수출국이 작성한 병해충 목록 이외의 규제 병해충이 수입된 화물에서 발견되어 비상조치가 취해진 경우
- 수입된 화물에서 식물위생 상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가 발견되어 비상조치가 취해진 경우

참고문헌

특정지역에서의 병해충 발생상황 결정, 1998. ISPM pub. No.8, FAO

수출증명 시스템, 1997. ISPM Pub. No.7, FAO

식물위생용어집, 1999. ISPM Pub. No. 5, FAO

식물위생증명서에 관한 지침 (ISPM 국제기준안)

개정된 국제식물보호협약, 1997. FAO

용어 정의 및 약어

지 역 (Area)

공식적으로 정의된 국가, 국가의 일부 또는 여러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

증명서 (Certificate)

식물위생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떤 화물의 식물위생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적 문서

상품 등급 (Commodity class)

식물위생 규정상 같이 취급될 수 있는 비슷한 상품의 범주

화 물 (Consignment)

하나의 식물위생증명서에 의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되는 일정 수량의 식물, 식물성산물 및/또는 다른 물품 (하나 또는 이상의 상품이나 더미로 구성될 수 있다)

수송중 화물(Consignment in transit)

병해충에 의한 오염이나 감염에 노출되지 않고 수입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나라를 통과하는 화물. 그 화물을 분할하거나 여타화물과 혼합할 수 없으며, 포장재를 교체할 수 없음

유 치 (Detention)

식물위생상의 사유로 화물을 공식적으로 보관 또는 억류하는 행위

비상활동(Emergency action)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 상황으로 취해진 즉각적인 식물위생활동

유 입 (Introduction)

병해충의 정착을 야기하는 어떤 병해충의 침입

IPPC

1951년 로마에서 FAO에 기탁되어 그후 개정되어온 국제 식물보호협약

NPPO

국가 식물보호기관

공식적 (Official)

국가 식물보호기관에 의해 제정, 승인 또는 수행되는

병해충(Pest)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식물, 동물 또는 식물병원체의 종, 계통 또는 생태형

병해충 상황 (어떤 지역에서의) (Pest status (in an area))

현재 및 과거의 병해충기록 및 여타 정보에 근거한 전문가의 판단을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결정된, 적절한 경우 그 분포를 포함한, 어떤 지역에서의 현재의 어떤 병해충의 존재 또는 부재

식물위생활동(Phytosanitary action)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소독처리와 같이 식물위생 규정이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공식 작용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IPPC의 증명서 양식에 따른 증명서(FAO, 1990)

식물위생조치 (Phytosanitary measure)

검역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령, 규정, 또는 공식적인 절차

식물위생규정 (Phytosanitary regulation)

식물위생 증명절차를 포함한, 검역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확산을 방지하거나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공식 규정

규제병해충(Regulated pest)

검역병해충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

RPPO

지역식물보호기구

확산 (Spread)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병해충의 지리적 분포의 확장

소독 처리 (Treatment)

병해충을 사멸, 제거 또는 불임화하기 위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

요건의 개요

새로 개정된 IPPC 협약에서는 체약국들이 수입된 화물에서 관련문서를 포함하여 식물위생 요건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의 발생이나 수입된 화물에서 잠재적인 식물위생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발견에 대해 취해진 비상조치를 보고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 수입체약국은 수출체약국에 가능한 신속히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수입된 화물에 취해진 비상조치를 통보할 것이 요구된다. 통보 시에는 수출체약국이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위반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 수입체약국은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통보에 필요한 정보에는 참조번호, 통보일자, 수입국 및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 화물의 종류, 최초 조치일자, 조치 사유, 위반사항이나 비상조치의 성격과 관련된 정보, 취해진 식물위생조치가 포함된다. 통보는 적절한 시기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국은 비상조치가 취해진 지역에 대해서 취해진 활동이 정당화되고, 식물위생 요건에 변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 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출국은 가능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중대한 위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재수출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비상조치의 통보는 재수출국가에 대해 시행되며, 경유화물에 대한 통보는 수출국가에 대해 시행된다.

요 건

1. 통보의 목적

수입된 화물이 지정된 식물위생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있어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것을 알리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병해충의 발견으로 인해 취해진 비상조치를 보고하기 위해서 수입국이 수출국에 통보한다. 기타 목적을 위한 통보는 자발적이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규제되고 있는 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IPPC 제1조 및 8조). 위반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위반 사유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통보를 하게 된다.

2. 통보된 정보의 이용

일반적으로 통보는 양자간에 이루어진다. 통보 및 통보에 사용된 정보는 공식적인 목적으로 유효하지만, 경솔하게 또는 일부만을 취할 경우 쉽게 오해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 오해나 오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 및 통보에 사용된 정보는 우선적으로 수출국에만 배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상품이나 지역의 식물위생상태에 변화가 있기 전, 또는 수출국의 기타 식물위생 시스템이 실패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동 사실이 널리 보고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ISPM No.8 “특정지역에서의 병해충발생 상황 결정” 중 병해충 검출 시의 통보관행 참조).

3. 통보와 관련된 IPPC 조항

일상적인 통보 시스템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IPPC의 조항에 근거한다.

- 제7.2조 : 수입체약국은 식물위생 증명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가능한 신속히 관련 수출체약국 또는, 적절한 경우 재수출체약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체약국이나 적절한 경우, 관련된 재수출체약국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입체약국에 보고해야 한다.
- 제7.6조 : 체약국들은 자국의 영토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이러한 사실의 보고에 대해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히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취해진 조치는 즉시 관련된 수출체약국, 사무국 및 체약국이 가입하고 있는 지역식물보호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 제8.1조 : 체약국들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제8.2조 : 체약국들은 정보교환을 위한 공식 연락창구를 지정해야 한다.

IPPC 체약국이 아닌 국가들은 동 기준에 제시된 통보시스템을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IPPC 제18조).

4. 통보의 근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는 수입된 화물에서 규제병해충이 발견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식물위생조치나 통보를 요하는 중요한 위반 사항도 있다.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 상황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 역시 수출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4.1 중요한 위반 사항

각 국가들은 통보의 목적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중요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될 것인지에 대해 양자간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수입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식물위생요건의 위반
- 규제병해충의 검출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상 미비
 - 식물위생증명서 누락
 - 식물위생증명서의 공인되지 않는 변경 또는 말소
 - 식물위생증명서상 정보가 중대하게 부족
 - 허위 식물위생증명서
- 금지품
- 화물 내 금지품 포함(예; 훠)
- 지정된 처리의 미실시 증거
- 여행객이나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이 아닌 소량의 금지품이 반복적으로 검출

수입된 화물의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위반 사항은 해당 화물이 식물위생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 체약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4.2 비상조치

수입화물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견된 경우 비상조치가 취해진다.

- 수출국이 작성한, 화물과 관련될 수 있는 병해충목록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규제병해충
- 잠재적인 식물위생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생물체

5. 통보 시점

통보는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또는 비상조치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식물위생조치가 취해진 경우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통보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심하게 지연될 경우(예; 생물체의 분류동정), 예비통보를 실시할 수 있다.

6. 통보에 포함되는 정보

통보는 특정한 최소 정보를 포함하여, 일관적인 양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식물보호기관은 수출국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 또는 이러한 정보가 적절하거나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 권고된다.

6.1 요구되는 정보

통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참조번호 : 보고하는 국가는 수출국에게 보낸 통신문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고유한 참조번호나 화물과 관련된 식물위생증명서의 번호가 될 수도 있다.
- 일자 : 통보문이 송부된 날짜가 기입되어야 한다.
- 수입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 이름
-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 이름
- 화물의 종류 : 가능한 경우 식물위생증명서의 번호에 의해, 또는 기타 참고 서류를 통해 화물의 종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 대한 학명(최소한 속 단위까지)과 상품분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화주 및 선주의 이름
- 화물에 대해 최초로 조치가 취해진 날짜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반 내용 및 비상조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보
 - 병해충의 분류동정 결과(제8항 참조)
 - 가능한 경우,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
 - 서류상의 문제점
 - 위반된 식물위생 요건
- 취해진 식물위생 조치 : 식물위생 조치와 동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화물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 인증마크 : 통보하는 기관에서는 유효한 통보임을 증명하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예; 스템프, 봉인, letterhead, 공인된 서명).

6.2 보조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국가들에게 보조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식물위생증명서나 기타 서류의 사본
- 진단 결과
- 병해충의 연관성. 즉, 병해충이 화물의 어떤 부분에서 발견되었으며 화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수출국이 위반 사례를 규명하고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정보

6.3 호칭, 부호, 약어

통보문이나 보조정보에서 호칭, 부호, 약어가 사용되어 해당국가로부터 설명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6.4 언어

통보문 및 보조정보에 사용되는 언어는 양자간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하는 쪽에서 선호되는 언어가 될 것이다. 연락창구를 통하여 정보가 요청된 경우에는 FAO 언어중 한가지로 제공되어야 한다(IPPC 제19조 3e항).

7. 문서 및 통신 수단

통보하는 국가는 통보문, 보조정보 및 관련 기록을 통보일로부터 최소 1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효율과 편의를 위해 전자매체를 통한 통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통보문은 IPPC 공식연락창구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보문을 어디로 전달할 것인지 양자간 합의되어있지 않다면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공식연락창구를 통한 통신은 수입국의 식물보호기관이 다른 공식 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인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8. 병해충 분류동정

수입된 화물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서는 그들이 규제병해충인지의 여부 및 이에 따른 식물위생 또는 비상조치가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류동정이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분류동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생육정도나 표본의 상태가 분류동정에 어려운 경우
- 적절한 분류 전문가가 없는 경우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통보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병해충을 분류동정 할 때 수입국은,

- 해당 병해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동정자 및/또는 실험실 이름을 포함하여 동정과 샘플링에 사용된 절차를 제공하며,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본이나 재료와 같은 증거물을 적당한 기간 동안(통보 후 1년 또는 필요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병해충의 생육단계 및 적절한 경우 해당 병해충의 생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능한 경우 종 수준까지, 또는 공식적인 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분류학적 수준까지 분류동정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위반사항 및 비상조치에 대한 조사

9.1 위반사항

수출국은 중대한 위반 사항의 원인을 조사하여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는 수입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병해충 발생상황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이 정보는 ISPM No.8(특정 지역에서의 병해충 발생상태 결정)의 통보 관행에 따라 전달되어야 한다.

9.2 비상조치

수입국은 취해진 비상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상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비상조치는 이를 지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히 평가되어야 한다. 비상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정당화 될 경우, 수입국은 식물위생조치를 조정 및 공고하고 이를 수출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10. 경유

경유화물에서 경유국의 요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비상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경유국이 요건 위반이나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상태가 최종 도착국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유국은 이를 최종 도착국가에 통보할 수 있다. 최종 도착국가는 이러한 통보문의 사본을 다른 관련 경유국에 전달할 수 있다.

11. 재수출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수출국에 적용되는 규정과 의무가 재수출국에 적용된다.